

제 1327 호  
1986.11.2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 
 편집인: 공 보 관 김 상 환  
 전 화: 731-8111-3  
 인 색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 전 화: 735-3337

제	보도재정	공보재정	공보관	공	보
인	인	인	인	인	인

# 시 보

## 차 례

◎ 공문시행	
○ 북한관판람안내	3
○ 정부공문서수신처번호변경사항통보	4
○ 관과번호변경통보	5
◎ 공 고	
제 621 호: 환지처분공고	6
제 623 호: 재개발사업(공명구역제 19 지구) 시행인가를위한공람	6
제 624 호: 제 2'종전기공사업폐면허실효처분	7
제 628 호: 재개발조합(마포로제 2 구역제 5 지구) 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	8

(이런계속)

인									
람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629 호 : 도시계획사업 ( 가스공급설비 ) 완료공고	8
제 630 호 : 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시행공람	9
⊙ 구 공 고	
성북구제 20 호 : 류정열사용기자재시공지정업체지정취소	9
강남구제 108 호 : 관인재교부	10
⊙ 사 령	

공 문 시 행

“뜻모아 하나로 일모아 세계로”

( 관 인 생 략 )

서 울 특 별 시

공보 02270-453

( 731-6111 )

1986.11.20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계 목 : 북한관 관람 안내

- 1. 국토통일원 북한02270-1323 ( '86.11.15 ) 호와 관련된,
  - 2.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에서 최근 북한실상과 관련한 사진전시관을
- 다음과 같이 개관 운영하고 있다.
- 3. 시산하 전무무원들의 관람은 물론 시민들까지 적극 홍보하여
- 최근 북한의 실상과 무향을 보고, 듣고, 도와함으로써 올바른 통일안보관
- 정립하고,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고취토록 할 것.

가. 관람안내

1) 위 치

-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 가 산 5-19
-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내

2) 관람시간 : 매일 10:00 ~ 16:00

- 단체관람 : 2일전신청 (대회당 50명내외)

3) 안내전화 : 236-1748, 1749

나. 북한관 현황

- 1) 전 시 실 : 권력사습전, 주민생활전, 군사전, 진통결전, 통일대화전
- 2) 시 청 과 실 : 북한영화상영 (정치, 경제, 군사, 주민생활등)
- 3) 회 의 실 : 통일대회의 광장운영 (통일문제세미나, 대담토론등)
- 4) 상 담 실 : 북한상대, 통일문제에 관한 상담 및 문의사항처리
- 5) 자 료 실 : 북한도서 전시 및 열람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시산하 전기관

( 관 인 생 탁 )

서 울 특 별 시

시민 01234-2144

( 735-3001 )

1986.11.20

수신: 수신처 참조

보존연한: 1년

제목: 정부공문서 수신처번호 변경사항 통보

- 1. 내무부 총무 01234-13200 ( '86.10.31 ) 호와 관련임.
- 2. '86.11.1부터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정부공문서 수신처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것  
가. 각시도

나 01 서울특별시	나 10 경기도	나 15 전라남도
나 02 부산직할시	나 11 강원도	나 16 경상북도
나 03 대구직할시	나 12 충청북도	나 17 경상남도
나 04 인천직할시	나 13 충청남도	나 18 제주도
나 05 광주직할시	나 14 전라북도	

나. 각시도 교육위원회

다 0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	다 10 경기도교육위원회	다 15 전라남도교육위원회
다 02 부산직할시 " "	다 11 강원도 " "	다 16 경상북도 " "
다 03 대구직할시 " "	다 12 충청북도 " "	다 17 경상남도 " "
다 04 인천직할시 " "	다 13 충청남도 " "	다 18 제주도 " "
다 05 광주직할시 " "	다 14 전라북도 " "	

다. 시행일: '86.11.1부터. 끝.

( 이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)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: 성과 01-68, 서구 1-17, 서보 1-17, 서사 1-57.

관 인 생 략  
서울특별시

울건 01410-712 731-6271 86.11.20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전화번호 변경통보

1. 올림픽 시설건설관 산하 올림픽현장(선수, 기자촌 종합상황실)의  
전화번호가 변경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사항

부 서 명	변 경 전	변 경 후	변 경 일 시	비 고
올림픽종합상황실	474-8688	406-8688	86.11.20	
올림픽건축담당관	474-7841	408-7841	.	
올림픽토목담당관	474-7842	407-7842	.	
올림픽설비담당관	484-8688	407-8688	.	

서울특별시

올림픽건축담당관전결

수신처: 서실 1-2, 서단 1, 서과 1-74, 서구 1-17, 서본 1-111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21 호

환 지 처 분 공 고

1. 당사가 '74.12.6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아세아 선수촌및 공원부지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번호 제 61조에 의하여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하며,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된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6. 11. 20

서울특별시장

다

음

- 가. 사업명 :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
  - 나. 환지처분 대상위치 : 강동구잠실동 (아세아 선수촌및 공원부지)
  - 다. 환지처분면적 : 226,656.9㎡
  - 라. 관계도서의 열람
    - 1) 환지처분내용 : 지번, 지목, 지적 층수에 대한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    - 2) 청산금 :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- 마. 공부정리 : 지금까지 사용된 역은 공부상의 지번, 지목,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에

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동변경된 사항을 당사에서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납부 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납부 즉시 정리되며 체비지 소유자는 당시 관계과에서 이진 등기절차를 취하시기 바라며 (구비서류 : 매도증서및 위임장, 교부신청서 (소정양식) 체비지 계약서및 명의 변경승인서, 확정된 토지대장등본1부, 매도증서및 위임장 각 2부)

바. 청산금의 정수교부 : 청산금의 정수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열람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정수 청산금은 납입고지 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끝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23 호

공평구역 제 19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

1. 건설부 고시 제 285호 ('78.9.26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 고시 제 533호 ('79.12.28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4호 ('84.4.27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및 변경 결정된 공평구역 제 19 지구의 지구내 토지소유자 한분주택주식회사가 도시재개발법 제 46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동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바, 동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2.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립기관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86.11.20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개요

1) 재개발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 제 19지구 재개발사업

2) 시행구역 : 종로구 종로2가 1-1, 3, 3-2, 4, 5, 5-1, -2, 6, 6-1, 9-3, 공평동 48, 49, 49-1, -2, -50, 51, 52, 53, 54, 55, 66, 68-1, -2, -3, 69, 69-1, -2, 70, 70-2, 71-1, -2, 3, -4, -6, -7, 72, 73, 74-1, -4, 75, 75-1, -2, -3, -4, -5, 76-1, -2, 77, 77-1, 78-1, -2, 79, 79-1, 80, 80-1, 81-1, -3, 82, 82-1, 83, 84-1, -2, -4, -5, 85-1, -2, 86, 87-3, -10, 88-1, 인사동 200, 210-1, 228, 264-1, 268-1 (제 75 필지)

- 3) 시행면적 : 6,850.1㎡
- 4) 시행자 : 한보주택주식회사 (대표이사 장여수, 이인국)
- 5) 주원사무소의소재지 : 강남구 테헤란동316
- 6) 시행기간 : 1986.11.20 ~ 1986.12.31
- 7) 건축개요
  - 대지면적 : 5,055.3㎡
  - 건축률 : 38.7% (건축면적 : 1,956.42㎡)
  - 용적률 : 560% (48,016.2㎡)
  - 층 수 : 지상 18층, 지하 5층
  - 주용도 : 업무 및 관공서설
  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4 호

제 2종전기공사업체면허실효처분

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종 전기공사업체 면허소지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실효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6.11.20

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	사유
2종-190	대양전기공사	송인동 313-15	조원중	면허실효처분	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(공사업체지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8 호

마포로제 2 구역제 5 지구 재개발조합 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

1. 건설부 고시제 345 호 (1979.9.21)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 시 제 412 호 ('81.11.13)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 제 2 구역 제 5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 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 발기 인 대표 김성섭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 립 및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에 있어 동법제 15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며,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서 통지 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.

1986.11.20  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명칭 : 마포로제 2 구역제 5

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: 마포구동학동 166-2 외 39 필지 (제 40 필지)

다. 시행면적 : 3,481 ㎡

○ 대지면적 : 2,770 ㎡

○ 공공시설면적 : 711 ㎡

라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서및정관

마. 사업시행예정자 :

마포로제 2 구역제 5 지구 재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김성섭

바. 공람기간 : 1986.11.20 ~ 1986. 12.19 ( 30 일간 )

사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(731-6356-9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9 호

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원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88 호 ('85.5. 22)로 시행허가된 다음 도시계획 사업 (가스공급설비)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업 완 료되었음을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11.20

서울특별시장



- 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고척동 66-2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가스공급설비)
- 다. 사업시행면적 : 10,246.8㎡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종로구 신문로 2가 6번길 강남도시가스㈜ 대표 정문철
- 마. 사업시행규모 : 건축면적 : 541㎡  
건축연면적 : 1,097.5㎡
- 바. 사업시행기간 : 85.5.22~86.9.30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0 호

도시계획사업 시행 (도로) 공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0 호 (83.7.26) 로 시설인정하고 고시 제 442 호 (83.8.26) 로 지적승인된 신림 1동 1635-91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한다.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할것이나, 마수통지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11.20.

서울특별시장

- 가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5-133
- 나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신림 1동 1635-91 주변 도로개설) 사업
- 다) 사업규모 : B=5~6m, L=18m
- 라)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관악구청장)
- 마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사업시행인가로부터 90일까지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: 별첨
- 사)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
- 아)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자) 기타사항 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.

구 공 고

◎성북구공고제 20 호

특정업사용기 자재시공지정업체 지정후소

에너지이용촉진과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업사용기 자재 시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지정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6.11.20

성북구청장

지정번호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사유	조치내용
성북제 74호	송 건설비	길음동 1070-33	임두빈	무담장소이전	지정취소
성북제 124호	성은종합설비	석관동 305-1	이한옥	"	"
성북제 125호	대흥설비공사	석관동 341-28	고광철	"	"

◎강남구공고제 108 호

관인재교부

강남구 논현동장직인(민원사무용) 및 계인, 서초제 2 동장직인(민원사무용), 신사동장직인(민원사무용) 및 계인을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통 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

태와 같이 공고한





1986년 11월 20 일







강 남 구 청 장

1. 확인명 :  
 (1) 논현동장직인(민원사무용) 및 계인  
 (2) 서초제 2 동장직인(민원사무용)  
 (3) 신사동장직인(민원사무용) 및 계인

2. 사용일시 : 1986.11.20 09:00

3. 공인의 인명

구분	신 인 명		구 인 명	
인				
공인명	강남구 논현동 민원 사무용 동장 직인	강남구 논현동 민원 사무용 계	강남구 논현동 민원 사무용 동장 직인	강남구 논현동 민원 사무용 계

구분	신 인 영		구 인 영	
인				
공인명	서초제2동민원사무용동장직인		서초제2동민원사무용동장직인	
인				
공인명	신사동민원사무용동장직인	제	신사동민원사무용동장직인	제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사 명</div>				
◎ 1986년 11월 13일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령 제 167 호</span>				
성명	발령부서		원부서	
장광운	대전시 건축을 담당		건축부 지방토목과	
◎ 1986년 11월 11일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령 제 155 호</span>				
성명	발령부서		원부서	
김성태	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,2,3호의 규정에 의거 11월에 직함.		건축지도과 지방토목과	
김연관	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,2호의 규정에 의거 11월에 직함.		지방토목소 지방기록기	

성 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 급
장운집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채에 차함.	용산구	지방전기원사보 (9 등 급)
백복기	불문 (경고) 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 의결사항	북부건설 사업소	지방기계장 (7 등 급)
황대철	불문 (경고) 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 의결사항	"	지방기계원 (8 등 급)
경 제 469 호			
성 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 급
이문건	총무과 파견 (86. 11. 14-87. 2. 20)	종합건설본부	지방건축기사보
명 제 470 호			
성 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 급
이교희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"감봉 2월"에 차함.	시립전신병원	지방행정주사
유인선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차함.	시립운동강	지방행정주사보
박종신	"	자동차관리 사업소	지방행정서기
곽정삼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"해임"에 차함.	"	"
유재우	"	"	"
장광수	불문 (경고)	북부건설사업소	"
장진주	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 례 제 33조 제 1항 (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제 1, 2호 해당)의 규정에 의거 "전채"에 차함.	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	지방감시원

◎ 1986년 11월 14일자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경제 471호</span>		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서	직 급		
하 태 직	운영과 파견근무를 해제함.	세종문화회관	총무팀		
송 관 직	운영과 파견근무를 명함. (*86.11.14~*86.12.31 까지)	(영화조경기단)	공무팀장		
◎ 1986년 11월 11일자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경제 472호</span>		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서	직 급		
유 철 성	경기도농촌진흥청 건설을 명함.	서울특별시	농촌지도사		
김 장 열		농촌지도소			
◎ 1986년 11월 18일자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경제 473호</span>		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서	직 급		
유 병 열	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.	성동구	공무팀장		
◎ 1986년 11월 17일자					
소 속	직 급	성 명	여행국	여행기간	여행목적
공사 3 부	지방공립직장	손병국	일본	*86.11.17	중앙청공사리본
기술심사	지방전기과	김성길		-11.26	건설공사리본
담당관인				(10일간)	입회(1차)
공사 2 부	지방전기과	박정구			
공사 4 부	지방도시개발	김인중			
서울특별시					